####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 여 수 시 보

시정지표

1. 시민공감 감동시정 1. 균형있는 상생경제 1. 사람중심 나눔복지 1. 품격있는 문화관광 1. 살기좋은 정주화경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18-383호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3 ○ 여수시 고시 제2018-385호 여수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 /4

#### 【공 고】

○여수시 공고 제2018-2760호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등 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 /13 ○여수시 공고 제2018-2767호 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18 ○여수시 공고 제2018-2770호 여수전통서시장 블로그 기자단 모집 공고 /35

#### 【기 타】

○여수시 조례 제2018-1369호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40 ○여수시 조례 제2018-1370호 여수시 여수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6

람	회				
	라				

###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제2조에 따라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합니다.

2018. 12. .

여 수 시 장

-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건설사업
- 2. 사업시행자 성명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여수바이오에너지㈜ 대표이사 한문선

나. 주 소: 여수시 중흥동 1724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전력공급 설치확충에 따른 공급안정성과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지역 전력수급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시설 확보

나. 사업의 개요: 34,568.9m²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여수시 중흥동 1724번지

나. 면 적: 34,568.9m²

5. 사업시행기간: (당초) 2016.12.15. ~ 2018.12.31. (변경) 2016.12.15. ~ 2021. 12. 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게재생략
- 7.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해당없음
- 8. 국 . 공유지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해당없음
- 9.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변경없음): 해당없음
- 10.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지형도면 고시(변경없음): 게재생략
- 11. 관계도서는 여수시 도시계획과(659-4012) 및 여수바이오에너지㈜(061-686-6420)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 여수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에 따라 어린이집 및 유치원시설 경계선 10M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2. 20.

# 여 수 시 장

- 1. 지정취지 :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흡연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코 자 함
- **2.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신설)
- 3. 지정시행일 : 2018. 12. 31.
- 4. 금연구역 지정대상
  - 「유아교육법」에 따른 관내 모든 유치원 75개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관내 모든 어린이집 151개소
    - ※ 향후 신규 시설의 설립(인가) 및 폐쇄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 및 해제
- 5. 금연구역 지정범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 6. 금연구역 내 계도기간 및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 2019. 1. 1. ~ 2019. 3. 31.
    - 과태료 부과시기 : 2019. 4. 1.
    -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 7. 고시방법 : 시보,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등
  -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보건소 건강증진과(☎659-42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표1] 금연구역 지정대상 현황

단설유치원					
연번	설립별	유치원명	소재지		
1	공립(단설)	여수성산유치원	여수시 대통1길 15		
2	공립(단설)	송현유치원	여수시 웅천7길 47		

병설	유치원		
연번	설립별	유치원명	소재지
1	공립(병설)	여수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수시 봉강4길 20
2	공립(병설)	여수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수시 진남로 151
3	공립(병설)	여수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수시 하멜로 35
4	공립(병설)	여수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수시 어항로 22
5	공립(병설)	여수미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수시 좌수영로 390
6	공립(병설)	여수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수시 망양로 306
7	공립(병설)	여수종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수시 공화북6길 52
8	공립(병설)	여수진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수시 광무3길 77~4
9	공립(병설)	경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수시 대경도4길 48
10	공립(병설)	여수봉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수시 봉산새철4길 28
11	공립(병설)	여수구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수시 구봉산길 51
12	공립(병설)	여수여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수시 문수로 142~16
13	공립(병설)	여수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수시 남산북10길 8
14	공립(병설)	여수한려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수시 여문1로 80
15	공립(병설)	여수문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수시 허문정1길 48~5
16	공립(병설)	여수양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수시 양지1길 21
17	공립(병설)	여수신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수시 신월로 614
18	공립(병설)	여수좌수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수시 여문2로 50
19	공립(병설)	쌍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수시 흥국로 47
20	공립(병설)	도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수시 선원4길 38
21	공립(병설)	시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수시 망마로 82~17
22	공립(병설)	소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수시 소호로 499

23	공립(병설)	여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수시 주동1길 30			
24	공립(병설)	상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수시 상암로 625			
25	공립(병설)	소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431			
26	공립(병설)	소라초등학교병설사곡분교장유치원	여수시 소라면 사곡로 35~16			
27	공립(병설)	소라초등학교병설신흥분교장유치원	여수시 소라면 서부로 472~9			
28	공립(병설)	소라초등학교병설여자분교장유치원	여수시 화정면 여자대동길 21			
29	공립(병설)	관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수시 소라면 관기길 20			
30	공립(병설)	율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수시 율촌면 율촌초교길 7			
31	공립(병설)	신풍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435~4			
32	공립(병설)	나진초등학교병설용창분교장유치원	휴원			
33	공립(병설)	화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수시 화양면 화동로 149			
34	공립(병설)	안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수시 화양면 화양로 341~3			
35	공립(병설)	안일초등학교병설백야분교장유치원	휴원			
36	공립(병설)	돌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1184			
37	공립(병설)	봉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수시 돌산읍 죽포1길 21~15			
38	공립(병설)	봉덕초등학교병설평사분교장유치원	휴원			
39	공립(병설)	여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수시 남면 금오로 836			
40	공립(병설)	화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수시 남면 마족길 5			
41	공립(병설)	화태초등학교병설월호분교장유치원	휴원			
42	공립(병설)	여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휴원			
43	공립(병설)	연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수시 남면 연도 서부안길 11			
44	공립(병설)	화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수시 화정면 개도화산길 50			
45	공립(병설)	거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수시 삼산면 거문학교길 26			
46	공립(병설)	거문초등학교병설덕촌분교장유치원	휴원			
47	공립(병설)	거문초등학교병설동도분교장유치원	여수시 삼산면 동도로 139			
48	공립(병설)	신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24			
49	공립(병설)	안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수시 소호7길 23			
50	공립(병설)	동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수시 돌산읍 강남10길 27			
51	공립(병설)	웅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수시 웅천중앙로 61			
52	공립(병설)	죽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수시 소라면 죽림로 3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립유치원						
연번	설립별	유치원명	소재지			
1	사립	금호유치원	여수시 여서로 217			
2	사립	꿈나무유치원	여수시 망마로 54			
3	사립	미주유치원	여수시 장성마을길 18~9			
4	사립	온누리유치원	여수시 신기남1길 6~10			
5	사립	성모유치원	여수시 신월로 799~2			
6	사립	신라유치원	여수시 봉계6길 12~23			
7	사립	여수중앙유치원	여수시 여문1로 90			
8	사립	영재유치원	여수시 여문2로 37			
9	사립	은혜유치원	여수시 안산2길 12			
10	사립	폴리키즈유치원	여수시 여서로 304~1			
11	사립	제일유치원	여수시 여문2로 76			
12	사립	백상유치원	여수시 좌수영로 431			
13	사립	여천푸른유치원	여수시 소호2길 6~3			
14	사립	한마음유치원	여수시 허문정2길 40~1			
15	사립	해바라기유치원	여수시 무선6길 21			
16	사립	홍익예능유치원	여수시 화산1길 24~5			
17	사립	선경유치원	여수시 양지3길 16			
18	사립	시온유치원	여수시 쌍봉로 318~1			
19	사립	소나무유치원	여수시 구봉2길 2			
20	사립	하늘빛유치원	여수시 용수길 2~35			
21	사립	킨더숲유치원	여수시 소라면 안심산길 111			

어린	이집		
연번	유형별	어린이집명	소재지
1	국공립	나진어린이집	여수시 화양면 나진길 16-26 여수시립나진어린이집
2	국공립	남면어린이집	여수시 금오로 860
3	국공립	묘도어린이집	여수시 묘도1길 64 묘도어린이집
4	국공립	미평어린이집	여수시 좌수영로 369-3 (미평동)
5	국공립	삼산어린이집	여수시 삼산면 덕흥1길 29
6	국공립	수정어린이집	여수시 수정2길 11 (수정동)
7	국공립	쌍봉어린이집	여수시 안산1길 181 (안산동)
8	국공립	여천어린이집	여수시 무선1길 8 (선원동)
9	국공립	연등어린이집	여수시 연등6길 54 (연등동)
10	국공립	웅천어린이집	여수시 웅천중앙로 54
11	7 7 21	조리1다다이라이지	여수시 덕양로 97-9 죽림휴먼시아 1단지내
11	국공립	죽림1단지어린이집	죽림1단지어린이집
12	그고리	조리2다리 이리 이지	여수시 죽림로 38 죽림휴먼시아2단지내
12	국공립	죽림2단지어린이집	죽림2단지어린이집
13	국공립	중흥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여수시 소라면 죽림3길 10 중흥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14	국공립	공립 청솔어린이집	여수시 강남1길 50 여수 돌산1차 청솔아파트
- '	708	02 9 C 9 G	청솔어린이집
15	국공립	화정어린이집	여수시 화정면 신흥길 32-11 이전신축으로 이전
16	사회복지법인	고려어린이집	여수시 문수북2길 23 (문수동)
17	사회복지법인	꽃들어린이집	여수시 소정길 30 (미평동)
18	사회복지법인	꿈동산어린이집	여수시 율촌면 동산개길 19-3
19	사회복지법인	꿈미래재롱이어린이집	여수시 봉강서1길 33 (봉강동)
20	사회복지법인	남산어린이집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46-18 (돌산읍)
21	사회복지법인	리라어린이집	여수시 신월로 561-6 (신월동)
22	사회복지법인	베타니아특수어린이집	여수시 문수7길 26-12
23	사회복지법인	새싹어린이집	여수시 진두1길 23 -7
24	사회복지법인	샘터특수어린이집	여수시 대교로 61 (봉산동)
25	사회복지법인	샬롬어린이집	여수시 만성로 337 (만흥동)
26	사회복지법인	석창어린이집	여수시 봉계4길 16-2 (봉계동)
27	사회복지법인	소라어린이집	여수시 소라면 조산로 286
28	사회복지법인	아가방어린이집	여수시 장군산길 63 (오림동)
29	사회복지법인	이화어린이집	여수시 장성2길 19 (안산동)
30	사회복지법인	중앙어린이집	여수시 성산4길 9-6 (화장동)
31	사회복지법인	참사랑어린이집	여수시 여서로 226-3 (여서동)
32	사회복지법인	천우어린이집	여수시 신기남3길 11 (신기동)
33	사회복지법인	한빛어린이집	여수시 대치1길 26-6
34	사회복지법인	호남어린이집	여수시 봉산남3길 7-34

35	사회복지법인	홍익어린이집	여수시 충민사길 31 (덕충동)		
36	법인·단체등	꽃동산어린이집	여수시 신월로 533 (신월동)		
37	법인·단체등	아이사랑어린이집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414		
38	법인·단체등	여천제일어린이집	여수시 학동서4길 58-20		
39	법인·단체등	온사랑교회부설제일어린이집	여수시 미평11길 10 (미평동)		
40	민간	e-좋은어린이집	여수시 덕양로 157 무선주공아파트 관리소 1층 (화		
41	민간	가온어린이집	여수시 웅천중앙로 8 107동 1층(웅천동, 웅천지웰)		
42	민간	개구쟁이어린이집	여수시 장성2길 41 (안산동)		
43	민간	고우나어린이집	여수시 시전4길 9 (신기동)		
44	민간	굿모닝어린이집	여수시 선원3길 10-22 (선원동)		
45	민간	그리스도어린이집	여수시 둔덕1길 16 (둔덕동)		
46	민간	금잔디어린이집	여수시 소호2길 13 -3 (소호동)		
47	민간	기쁜소식어린이집	여수시 둔덕8길 7-26		
48	민간	꿈모아어린이집	여수시 성산6길 47-10		
49	민간	다니엘어린이집	여수시 구봉길 40 (국동)		
50	민간	다사랑어린이집	여수시 성산2길 10-8		
51	민간	다솜어린이집	여수시 대치1길 82-1		
52	민간	단풍숲어린이집	여수시 봉계6길 54		
53	민간	더조은어린이집	여수시 소호5길 39 주은금호 3차		
54	민간	도담어린이집	여수시 상암로 16		
55	민간	동국어린이집	여수시 충무로 87 충무맨션 상가 2층 동국 어린이집		
56	민간	동그라미어린이집	여수시 시전3길 8-3		
57	민간	동아 어린이집	여수시 학동북3길 8-8 학동54번지		
58	민간	둥지어린이집	여수시 돌산읍 강남3길 17-1		
59	민간	라온어린이집	여수시 용수길 2-9 (둔덕동, 라온어린이집)		
60	민간	로얄어린이집	여수시 좌수영로 682-34 로얄아파트 관리동		
61	민간	리틀세화어린이집	여수시 선원7길 52 (선원동)		
62	민간	리틀한빛어린이집	여수시 대치1길 26-3		
63	민간	만남어린이집	여수시 무선3길 3 (선원동)		
64	민간	무지개어린이집	여수시 안산3길 18 (안산동)		
65	민간	민들레어린이집	여수시 웅천중앙로 33 (웅천동, 웅천지웰2차)		
66	민간	배울학어린이집	여수시 여서동4길 6 (여서동)		
67	민간	보배어린이집	여수시 심곡길 7 (안산동)		
68	민간	사과나무어린이집	여수시 허문정1길 39 (문수동)		
69	민간	산들어린이집	여수시 박람회길 81 덕충동, 엑스포힐스테이트		
70	민간	새빛어린이집	여수시 신기북3길 6 (신기동)		
71	민간	서희어린이집	여수시 신월로 655 서희어린이집		
72	민간	석화어린이집	여수시 여서동4길 10 (여서동)		
73	민간	숲속어린이집	여수시 만성로 158 (미평동)		

74	민간	아이조아어린이집	여수시 장성3길 30 (안산동)			
75	민간	아해뜰어린이집	여수시 쌍봉로 171-11			
76	민간	안데르센어린이집	여수시 여문2로 53-4			
77	민간	양우내안애어린이집	여수시 소라면 도원로 80 (죽림 양우내안애)			
78	민간	에덴어린이집	여수시 소호4길 13-12 에덴어린이집			
79	민간	여수웅천1차부영사랑으로어	여수시 웅천로 189 웅천동, 여수웅천 부영1차아파트			
80	민간	린이집 여수웅천2차 부영사랑으로어린이집	여수시 웅천로 261 웅천동, 여수웅천 부영2차아파트			
81	민간	여수웅천3차 부영사랑으로어린이집	여수시 웅천로 291 웅천 부영3차			
82	민간	여수죽림1차 부영사랑으로어린이집	여수시 소라면 죽림로 10 (죽림부영1단지내 보육시설)			
83	민간	여수죽림2차 부영사랑으로어린이집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114 (죽림부영2차내)			
84	민간	연꽃어린이집	여수시 소호4길 13-9			
85	민간	옹달샘어린이집	여수시 여문2로 11-10 문수종합사회복지관내			
			용달샘어린이집 어스 나 다 보고가 20 다 남주 고2다고 기기도			
86	민간	요정나라어린이집	여수시 무선2길 39 무선주공2단지 관리동 요정나라어린이집			
87	민간	우주어린이집	여수시 허문정2길 19 (문수동)			
88	민간	은현어린이집	여수시 여서2로 47 은현어린이집			
89	민간	장천어린이집	여수시 율촌면 동산개길 42			
90	민간	좋은어린이집	여수시 국동13길 85 (국동)			
91	민간	주사랑어린이집	여수시 고소3길 114 (고소동)			
92	민간	지웰3단지 어린이집	여수시 웅천중앙로 47 웅천 지웰3단지 내			
93	민간	지웰어린이집	여수시 예울마루로 30 119동 1층(웅천동, 웅천지웰)			
94	민간	찬양어린이집	여수시 미평남4길 11-2 (미평동)			
95	민간	참예쁜어린이집	여수시 소호6길 11 (소호동)			
96	민간	초록빛어린이집	여수시 박람회길 61 덕충동, 엑스포힐스테이트 1단지내			
97	민간	큰사랑어린이집	여수시 둔덕6길 21 (둔덕동)			
98	민간	튼튼어린이집	여수시 여서로 176 496동 1호(여서동, 부영7차)			
99	민간	하나둘셋어린이집	여수시 여문2로 61 450-1번지			
100	민간	한려어린이집	여수시 쌍봉로 316 한려아파트내 (한려어린이집)			
101	민간	한별어린이집	여수시 신월로 239-12			
102	민간	한울어린이집	여수시 양지1길 5 한울어린이집			
103	민간	해그림어린이집	여수시 봉계대곡길 35 (봉계동)			
104	민간	해맑은어린이집	여수시 화산2길 40 (화장동)			
105	민간	해성예능어린이집	여수시 성산5길 18 (화장동)			

106	민간	해오름어린이집	여수시 돌산읍 강남10길 18-20
107	민간	행복나라어린이집	여수시 시청서4길 24 (학동)
			여수시 시청로 84 전남 여수시 시청로84 금호타운내
108	민간	행복한어린이집	1동앞
109	가정	EQIQ어린이집	여수시 문수7길 24 (문수동)
110	가정	꼬꼬마어린이집	여수시 좌수영로 682-24 103동 101호(봉계동, 신동아)
111	가정	꿈나래어린이집	여수시 진남로 133 (관문동)
112	가정	꿈많은어린이집	여수시 장성3길 44 (안산동)
113	가정	꿈사랑어린이집	여수시 소호6길 15-7 (소호동)
114	가정	동화나라어린이집	여수시 양지2길 9 동화나라어린이집
115	가정	미소천사어린이집	여수시 좌수영로 205 1동 103호(광무동, 럭키광무아파트)
116	가정	미지어린이집	여수시 신기북3길 43-14
117	가정	사랑가득어린이집	여수시 도원로 204 501동 103호(안산동, 부영5차아파트)
118	가정	색동어린이집	여수시 소호로 658 103동 105호(학동, 부영1차)
119	가정	시전사임당어린이집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23 102동 106호(시전동, 우미)
120	기저	이기대투려이리이지	여수시 좌수영로 682-34 101동 105호(봉계동,
120	가정	아기대통령어린이집	로얄골드빌)
121	가정	아기별어린이집	여수시 쌍봉로 32 108동 103호(학동, 신동아파밀리에)
122	가정	아리키즈어린이집	여수시 종고산길 25 (덕충동)
123	가정	아이들어린이집	여수시 대치3길 17-5
124	가정	여수사임당어린이집	여수시 관문서2길 9-1
125	가정	예솜어린이집	여수시 봉계대곡길 50 106동 104호(봉계동,아주타운)
126	가정	오뚜기어린이집	여수시 여서동6길 8 (여서동)
127	가정	우리아이어린이집	여수시 도원로 204 503동 108호(안산동, 부영5차아파트)
128	가정	즐거운어린이집	여수시 문수북5길 16 201동 107호(문수동, 부영2차)
129	가정	지혜어린이집	여수시 문수7길 5-2
130	가정	참솔어린이집	여수시 쌍봉로 316 110동 102호(둔덕동, 한려주공)
131	가정	초록나무어린이집	여수시 쌍봉로 32 116동 102호(학동, 신동아파밀리에)
132	가정	초코어린이집	여수시 선소로 72-13 301동 104호(신기동, 부영아파트)
133	가정	축복어린이집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220 태양맨션 102호 (종화동)
134	가정	크는아이 어린이집	여수시 쌍봉로 366 6동 106호(둔덕동, 중앙하이츠)
135	가정	- 큰나무어린이집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46-19 203동 108호(우두리,
133	110	 	청솔2차)
136	가정	키즈맘어린이집	여수시 여서1로 8 605동 105호(여서동, 부영6차)
137	가정	킨더스쿨어린이집	여수시 소호5길 22 2동 105호 소호동 금호아파트
138	가정	통키어린이집	여수시 여서동7길 8 (여서동)
139	가정	파랑새어린이집	여수시 무선4길 12 (선원동)
140	가정	프뢰벨어린이집	여수시 봉계대곡길 62 104동 104호(봉계동, 대광오투빌)
141	가정	한나어린이집	여수시 안산1길 136 105동 109호(안산동, 모아미래도)

140	기되	베트이리이지	여수시 좌수영로 682-34 104동 102호(봉계동,		
142	가정	해들어린이집	로얄골드빌)		
143	가정	해피하우스어린이집	여수시 도원로 204 506동 101호(안산동, 부영5차아파트)		
1 4 4	기원	*!\\\\\\\\\\\\\\\\\\\\\\\\\\\\\\\\\\\\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52 103동 104호(신기동,		
144	가정	햇살어린이집 	우림필유)		
145	직장	GS칼텍스 지예슬어린이집	여수시 소호로 449 GS칼텍스 쌍봉사택		
146	직장	LG여수어린이집	여수시 소호로 619 (소호동, 엘지화학사택내)		
147	직장	롯데첨단소재여수어린이집	여수시 새터로 6 신기동, 롯데첨단소재 사택 내		
140	직장	롯데케미칼 mom편한			
148		어린이집	여수시 무선로 27 선원동, 롯데케미칼 사택 내		
149	직장	여수시청직장어린이집	여수시 시청동1길 30 (학동, 여수시청직장어린이집)		
150	직장	한화여수 어린이집	여수시 신월8길 35-8 (신월동)		
151	オレスト	한화케미칼여천NCC	어스지 소축근 [12 /소축도 회회레미카 브랜비)		
151	직장	공동어린이집	여수시 소호로 513 (소호동, 한화케미칼 사택내)		

# 공 고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여수시 시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기능 강화를 위한 여수시 정책기획위원회, 여수시 교육혁신위원회, 여수시 의료혁신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모집인원 및 자격요건 등을 미리 알려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후보자를 모집하고자 「여수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8년 12월 20일

# 여 수 시 장

#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등 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

1. 모집기간 : 2018. 12. 20. ~ 2019. 1. 3.(15일간)

2. 모집인원 : 29명

3. 모집분야별 응모자격 기준

모집분야	모집인원	응모자격 기준
여수시 정책기획위원회	13명	<ul> <li>5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자</li> <li>당해분야 석시학위 이상 취득한 자로 3년 이상 관련분야 종시경력이 있는 자</li> <li>당해분야 기관단체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li> <li>※ 분야: 일자라인구, 자치분권, 미래산업, 복지·여성, 도시건설교통, 안전·환경, 지역경제, 문화체육관광, 해양수산, 농림축산</li> </ul>
여수시 교육혁신위원회	8명	<ul> <li>▶ 5년 이상 보육·교육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자</li> <li>▶ 보육·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로 3년 이상 관련분야 종사 경력이 있는 자</li> <li>▶ 보육·교육분야 기관·단체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li> </ul>
여수시 의료혁신위원회	8명	<ul> <li>▶ 5년 이상 보건·의료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자</li> <li>▶ 보건·의료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로 3년 이상 관련분야 종사 경력이 있는 자</li> <li>▶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보건·의료분야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li> <li>▶ 보건·의료분야 기관·단체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li> </ul>

- 4. 개별위원회별 주요기능
  - 가. 정책기획위원회
    - 시정 주요정책의 계획 수립·집행·평가 및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정책. 현안과제 연구, 새로운 정책개발과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등
  - 나. 교육혁신위원회
    - 보육·교육혁신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시정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 보육·교육화경 개선 및 우수 교육시설 육성에 관한 사항 등
  - 다. 의료혁신위원회
    - 보건·의료혁신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시정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등
- 5. 위원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 6. 신청기한 : 2019. 1. 3.한
- 7. 신청방법
  - 가. 접 수 처 : 여수시 기획예산과
  - 나.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E-mail
    - 주 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o E-mail: soonsooin@korea.kr
- 8. 제출서류
  - 가. 공개모집신청서(별첨1)
  - 나. 재직(경력)증명서
  - 다. 최종학위증 및 자격증 사본 등
- 9. 선정방법 및 기준
  - 가. 선정방법 : 서면심사 후 적격자 선정
  - 나. 선정기준
    - ㅇ 해당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활동경력이 많은 사람
    - ㅇ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다양하거나 많은 사람
    - ㅇ 동일 조건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
  - 다. 대상자 선정 통보 : 2019. 1. 11.(선정된 자에 한해 개별통보)

#### 라. 기타

- 해당 위원회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원 선정 후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자문보고서 제출 시 자문료를 지급합니다.
- 접수된 신청서는 여수시 정책기획위원회, 여수시 교육혁신위원회, 여수시 의료혁신위원회의 위원 선정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일체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등 제출하신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여수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6조(위원회 구성 등)에 공고일 현재 여수시 운영 3개 위원회를 초과한 위촉자는 제외됩니다. (단,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여성위원은 예외)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여수시 기획예산과 정책개발팀(☎061-659-3431)으로 문 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등(정책기획, 교육혁신, 의료혁신) 위원

# 공개모집 지원 신청서

					수번	ত্র			
분 야	( ) 정책기획위원 * <b>분야</b> :	회	( )	교육혁	신위위	원회	( ) 의료	혁신위원회	
성 명 (생년월일)	한글 : ( 년 월 약	旦, 만	세)	연 락	처	집 : HP:			
주소(도로명)									
직 업 (구체적으로기재)		Z Z	직장소 직	:재지 종					
여수시 거주기간	~	•	•	( l	<u></u>	월)			
	위원회명	직 .	위		フ	'l Z	<u>}</u>	비고	
각종 위원회						~			
참 여 경 력									
지원동기									
기타 특기사항 (주요 논문 및 저서 등)									
위와 같이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등(정책기획, 교육혁신, 의료혁신) 위원으로 참여하고자 지원 신청하오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 부서장 :									
여수시장	귀하								
붙임 1. 이력서(사 2. 자격증명( 3. 경력증명사	최종학위증, 자격증	등) 서튜	루 1부				신청 수수료	: 없음	

-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 소집한 개인정보는 위원회 구성 운영 이외에는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٥٦	력	서	
사 진	성명(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등록기준지					
주 소 (도로명주소)					
년 월 일		학 력	사 항		학 교 명
년 월 일		경 력	사 항		기 관 명
년 월 일		포 상 및 형	벌 사 항		기 관 명

이력서의 모든 기재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인)

「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 여 수 시 장

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사회재난 피해자 구호·생계 등 신속한 지원으로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사회 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 한 조례를 행정안전부 변경 표준안에 맞춰 일부 개정하고자 함

#### ※ 관련 공문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2381호(2018.07.26.) 및 도 사회재난과-8041호(2018. 7. 31)

### 2. 주요내용

-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안 제4조)
  -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기준에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신설
-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안 제5조)
  -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
- 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의 대항(안 제6조)
- 원인제공자는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 을 주장하여 청구에 대항할 수 있음
- 이미 지급한 때에는 초과 금액에의 반화을 청구 할 수 있음
- 부칙 제2조 신설(장례비·치료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 3. 입법예고기간 : 2018. 12. 20. ~ 2019. 1. 11.

### 4. 의 견 제 출

가.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월 1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 할 곳:

- (우 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안전총괄과)
- 전화 : (061)659-3236, 팩스 : (061)659-5838, 전자우편 : safe74@korea.kr
-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안전총괄과(전화: (061)659-32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끝.

# 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경우"를 "지역의"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로,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을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고 복구하기"를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로, ""시"이라"를 ""시"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피해의"를 "피해에 대한"으로, "전라남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기준)"을 "(지원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 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제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 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제6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종전의 제5조)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를 "원인제공자"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을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지원"으로, "재난피해자로부터"를 "피해주민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6조)제2항 중 "재난피해자는"을 "피해주민은"으로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재난피해자가"를 각각 "피해주민이"로, 같은 항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6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8조) 본문 중 "시장은 제6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를 "시장이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으로,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말한다)"를 "말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8조) 단서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 중 "제6조제6항"을 "제8조제6항"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를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이"로, "제5조에 위반됨"을 "제7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재원"을 "재원(財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사회재	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난으로 인한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에 대한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기준 등	
<u>에 대</u>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및안	제2조(적용 범위)
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여수시에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u>경우</u> 해	<u>지역의</u>
당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 결정)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	제3조(지원 결정) ①
"이라 한다)은 <u>다음 각 호</u> 의 어느 하나	<u>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u> -
에 해당하는 <u>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u>	<u>경우에는 법 제16</u> 조제1항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수시 재난안	및 제2항에 따라
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법 제16조제2	
항에 따른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	
의(이하 "시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	
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	- <u>피해주민</u>
(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	

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	1
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	
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u>재난피해</u>	피해주민
<u>자</u> 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	
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2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u>이</u>	
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고 복구하기 위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한 여수시(이하 <u>"시"이</u> 라 한다) 차원	<u>"</u> '八 <u>"</u>
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	3
은 시설의 복구와 <u>재난피해자</u> 의 생계	<u>피해주민</u>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시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	②
으로 재난으로 인한 <u>피해의</u> 지원이 곤	<u>피해에 대한</u>
란한 경우에는 <u>전라남도지사</u> 에게 지원	<u>도지사</u>
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제4조(지원 기준) ①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u>J</u>
<u>재난피해자</u> 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u>해주민</u>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u>4</u> . (생 략)	<u>5</u> .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대책본부	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

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u>&lt;신 설&gt;</u>	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u>있다.</u>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
	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u>&lt;신 설&gt;</u>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u>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u>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u>다.</u>
<u>&lt;신 설&gt;</u>	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은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
	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u>&lt;신 설&gt;</u>	제6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
	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
	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
	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
	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u>수 있다.</u>
제5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u>피해주민</u>
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u>사</u>	원인
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	제공자
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	
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u>제6조(생활</u> 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u>생활</u>	<u>제8조(생활</u> 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u>생활</u>
<u>안정지원 및 간접지원</u> (이하 "생활안정	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u>재난피해자</u>	<u> 지원 피해주민</u>
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u>으로부터</u>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u>재난피</u>	② <u>피해주</u>
<u>해자는</u> 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	민은
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	
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③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u>재난피</u>	⑤ <u>피해주</u>
<u>해자가</u>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민이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u>재난피해자</u> 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 <u>피해주민</u>
통장・이장・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	
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시	제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장은 <u>제6조제6항</u> 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	<u>제8조제6항</u>
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	
에 제공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8조(지급방법) 시장은 제6조제6항에 따	제10조(지급방법) 시장이 제8조제6항에
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	따라 피해주민
로 지원하는 자금은 <u>재난피해자</u> 명의의	<u>피해주민</u>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	
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	
회사등을 <u>말한다)</u>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u>말한다)의</u>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	
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u>재난피해자</u> 의 의사에 따라 지	<u>피해주민</u>
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u>제9조(환수)</u> ① 시장은 <u>제6조제6항</u> 에 따	<u>제11조</u> (환수) <u>제8조제6항</u>
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u>자금이나 물품</u>	<u>지원받은 자금이</u>
<u>을 받은 사람이</u> 제4조 및 <u>제5조에 위반</u>	<u>나 물품이</u> <u>제7조에 위반되</u>
<u>됨</u> 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	<u>어 지원되었음</u>
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	
야 한다.	
<u>제10조</u> (재원의 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u>제12조</u> (재원의 확보)
따른 지원에 필요한 <u>재원</u> 을 확보하기	<u>재원(財源)</u>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u>제11조·제12조</u> (생 략)	<u>제13조</u> ㆍ <u>제14조</u> (현행 제11조 및 제12조
	와 같음)

### 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 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이 발생하였으나, 여수시에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해당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지원 결정)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재난이 다음 각호의어 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수시 재난안전 대책본부회의(이하 "시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 (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시장은 시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기준) 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 5. 그 밖에 시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 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 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시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 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 제6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 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지원 (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피해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④ 시장은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이장・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수 있다.
  -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1. 중앙행정기관
  -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 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 제10조(지급방법) 시장이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 시장은 제8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이 제4조 및 제7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재원의 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에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	급규명	:	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circ$	성명(단	단체명)	:									
$\circ$	주	소	:									
$\circ$	생 년	월 일	:									
$\circ$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 여수전통서시장 블로그 기자단 모집 공고

'고객과 상인이 더불어 공존하는 즐거운 시장'여수전통서시장에서 〈2019 여수전통서시장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여수전통서시장 활성화를 위 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실 기자단을 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및 지원바랍니다.

### 2018년 12월 20일

# 여수전통서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 1. 모집개요

- 모집대상
  - 여수 인근에 거주하여 여수전통서시장 홍보 및 취재가 가능한 사람
  - 여수에 관심이 많은 전문 블로거 및 SNS 이용자
  - 블로그 기자단 및 기타 유사한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활동 여부 확인 증명)
  - 블로그, 카페, SNS를 운영 중이며, 온라인 소통에 관심이 많은 사람 ※ 우대사항
  - ① 동영상 촬영 및 홍보용 게시물 제작이 가능한 사람
  - ② 블로그 이웃 또는 SNS 팔로워가 높은 사람
  - ③ 여수시청 또는 전남 블로그 기자단
  - ④ 개인 블로그, SNS에 여수 홍보 관련 게시물이 일정 수 이상인 사람
- 모집인원 : 10명
- 모집기간 : 2018. 12. 20. ~ 2019. 1. 7.
- 활동기간 : 위촉일로부터 2019년 3월까지
- 활 동 비 : 시장 홍보용 취재, 홍보게시물 제작 시 소정의 활동비 지급

### 2. 지원방법 및 선정기준

○ 지원방법 : 방문접수 및 전자우편으로 신청

- 접수기간 : 2018. 12. 20. ~ 2018. 1. 7.

- 전자우편 메일주소 : ysssj1064@naver.com

- 방문접수 : 전남 여수시 서교2길 5-2 다올슈즈백화점 2층

여수전통서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 접수시간 : 평일(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 전화문의 : 061.642.1063

### ○ 선정기준

- 참여 의지, 전공·특기, 개인 SNS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50점)

※ 개인 블로그 지수 가중치 적용

연 번	방문객수(일)	가중치	비고
1	4천명 이상	25점	
2	2천 ~ 3천	10점	
3	1천 ~ 2천	7점	
4	500명 ~ 1천	5점	
5	500명 이하	3점	

- DSLR 소지(10점)
- 포토샵, 일러스트, 동영상 편집기술 등(10점)
- 기타 활동 가점(30점)
- 제출서류
  - 블로그 기자단 신청서(붙임1 참조)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붙임2 참조)
  - 기타 활동 증명서(보유자에 한함)
- 3. 최종발표 : 2019. 1. 8(화), 최종 선정자에게 개별 통보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함
-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할 경우 1회에 한해서 재공고 모집 예정(재공고 모집 날짜 는 최종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 4. 세부운영사항

- 활동내용
  - 여수전통서시장과 관련된 콘텐츠 발굴 및 아이디어 제공
  - 여수전통서시장 행사 및 이벤트, 먹거리, 볼거리 등 월별 현장취재와 콘 텐츠 제작
  - 여수시 문화·관광과 연계한 현장취재 및 콘텐츠 제작
  - 블로그 및 SNS 온라인 홍보 활동 참여 및 전파
- 활동방법

구 분	활용매체	활동내용	비고
	블로그	개인 블로그에 글·사진·동영상 등 등록 후 공식 블로그에 업로드	홍보물 업로드 후 1년간 삭제불가
온라인	페이스북	공식 SNS에 등록한 포스팅 자료를 개인 SNS로 공유하여 확산	"
	인스타그램	공식 SNS에 등록한 포스팅 자료를 개인 SNS로 공유하여 확산	"

### ○ 지원사항

- 위촉에 따른 지원사항
  - 여수전통서시장 블로그 기자단 위촉장 수여
  - 시장체험 및 취재 활동비 지원
  - 여수전통서시장 내 유·무료 행사 및 이벤트 우선 선발
  - 정기적으로 직접 작성한 글·사진 포스팅 시 소정의 활동비 지급
- 해촉사유
  - 질병 등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부진할 시 기자단에서 해촉
  - 자료수집 및 취재과정에서 강압적인 행동 및 타 언론사 사칭 시 강제 해촉

## ○ 추진일정

- 2018. 12. 19. ~ 2019. 1. 7. : 지원서 접수
- 2019. 1. 8. : 결과 발표 및 개인별 통보
- 2019. 1월중 :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 2019. 위촉일~ 3월말 : 블로그 기자단 운영

## 〈붙임〉1. 블로그 기자단 신청서 양식 1부.

2.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끝.



# 여수전통서시장 블로그 기자단 지원서

### [인적사항]

사진 (6개월 이내 최근사진)	이 름		성 별	남 / 여
	나 이		학교(직장)명	
	직업(일반인)		전공(대학생)	
	주 소			
	휴대전화	( )	이메일	

### [경력사항]

작문능력	상 / 중 / 하	정보화 능력			상 / 중 / 하		
스마트폰 보유 (사용기간)	유(년)/	SNS활용 경험			유 / 무		
DSLR 보유	유 / 무	사진편집 능력			상 / 중 / 하		
보유 카메라 기종		편집 가능	: 프로그램				
개인블로그, 페이스북 URL	(개인블로그)				(일방문	객 수 :	)
	(페이스북/인스타그	Z <i>램)</i>			(팔로워	<i>수:</i>	)
타기관 기자단 활동경력 (해당지에 한함)	기관명 (블로그명)			활동기	간		
<u>(활동내용 간략히 기재)</u>							

### [수상경력]

수상명	일 자	활동내용	수여기관(단체)
*필요시 칸 추가			

위 내용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작성자	(o	I١
~ ~ ~ ~ ~ ~ ~ ~ ~ ~ ~ ~ ~ ~ ~ ~ ~ ~ ~	1.7	

여수전통서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귀하



#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동의서

여수전통서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에서는 여수전통서시장 매대 운영자 모집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1. 수집.이용목적
  - 여수전통서시장 먹거리 광장 매대 운영자 모집 관련 자료 관리
- 2.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및 휴대폰 번호, 경력, 자격증 현황
- 3.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 임금지급,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에 의하여 5년간 보관
-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0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	---------	-------	--------	----

2018년 월 일

작성자	(	인	`
-----	---	---	---

여수전통서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귀하

제18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미래 발전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2 월 20 일

中个小及之中的

여수시 조례 제1369호

붙임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1부.

#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정책 제안이나 자문을 구하고 시정의 미래발전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발 전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시정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시정 장.단기 특정 주제의 전략 수립 등에 관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여수시 정책기획위원회, 여수시 교육혁신위원회, 여수시 의료혁신위원회(이하 "개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개별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이하 "미래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① 미래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개별위원회 간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2. 새로운 정책과제의 자문을 위한 개별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항
- 3. 설치 목적이 실현된 개별위원회의 폐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여수시 정책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 1. 시정 주요정책의 계획 수립.집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 2. 시정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3. 각 분야별 정책 및 현안과제 연구에 관한 사항
- 4. 새로운 정책의 개발,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여수시 교육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 1. 교육혁신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시정 주요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 2. 교육환경 개선 및 우수 교육시설 육성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여수시 의료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 1. 의료혁신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시정 주요 의료정책에 관한 사항
- 2.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등) ① 미래발전위원회는 개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 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책기획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 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 ② 개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개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정책기획 위원 : 업무관련 국장, 정계·재계 인사, 교수, 법률 전문가, 연구· 언론·문화·예술 분야 등 각계 전문가와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 2. 교육혁신 위원 : 업무관련 국장, 유치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육계 대표,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 교육혁신을 주도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 3. 의료혁신 위원 : 업무관련 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 가 등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미래발전위원회 및 개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임명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개별위원회가 폐지되면 소속 위원의 남은 임기는 소멸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2. 위원이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미래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개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분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1.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별 활동분야와 관련된 소관 업무 관.과.소장이 된다.
  -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 2. 회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 보존
  - 3.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자문보고서 등의 제출) ① 위원장은 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문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자문결과를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료제출 등 협조) 시장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제출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① 시장은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자문보고서에 대해서 해당 위원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권리) ① 자문 성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여수시가 가진다.
-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8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여수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2 월 20 일

中个小장 利 2 月间

여수시 조례 제1370호

붙임 여수시 여수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 여수시 여수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통해 여수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스포츠클럽"이란「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단법인 여수스포츠클럽을 말한다.
- 2. "보조사업"이란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2 항 및「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다음 각 호의 지 원을 할 수 있다.
  - 1. 예산의 범위 내에서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 3.「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 4. 스포츠클럽의 정보망 구축·운영 등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운영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보조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
- 3. 금액 산정의 적정성 유무
-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 5. 그 밖에 보조사업의 수행역량이 있는지 여부 등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조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실적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보조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 출해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보고요구를 받은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시장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보조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공무원증을 제시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른 검사한 결과 보조사업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보조사업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7조(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①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2. 법령,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4.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태만히 하는 경우
  - 5.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포상) 시장은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1. 스포츠클럽 또는 그 구성원
  - 2. 시에 소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 3. 그 밖에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